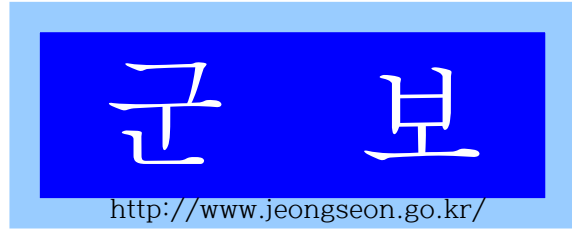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90호 2022. 2. 16. (수)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2-132호 정선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1
- 정선군 공고 제2022-133호 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7
- 정선군 공고 제2022-173호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 예고.....12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2-132호

정선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8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조례로 정한 지원범위 내에서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으나 공용차량의 정의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용차량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보완(안 제2조)
 - 공용차량의 정의를 25인승 버스에서 승합차로 변경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22. 2. 8. ~ 2022. 2. 28.(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회계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행정국 회계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06), 팩스(033-560-2272)
- 주 소 :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정선군청 행정국 회계과)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붙임 가.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나.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다. 관계법령 발췌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25인승 이상 버스”를 “승합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공용차량”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u>25인승 이상 버스를</u> 말한다.	1. ----- ----- ----- ----- <u>승합차</u>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과약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정선군 공고 제2022-133호

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물품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8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선군 물품관리조례」의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증품의 취득 심의 주체를 현실에 맞게 반영(안 제11조제1항~제3항)
 - “강원도기부 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정선군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22. 2. 8. ~ 2022. 2. 28.(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회계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행정국 회계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06), 팩스(033-560-2272)

- 주 소 :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정선군청 행정국 회계과)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붙임 가.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나.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다. 관계법령 발췌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물품관리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강원도기부 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정선군 기부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각각 “정선군 기부심사위원회”로, 같은 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u>강원도기부 금품모집 심의위원회</u> 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 ----- ----- <u>정선군 기부</u> <u>심사위원회</u> ----- -----.
②주관부서의 장은 <u>기부금품모집 심의위원회</u>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u>정선군 기부심사</u> <u>위원회</u> ----- -----.
③ <u>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u> 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u>의거</u>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③ <u>정선군 기부심사위원회</u> ----- ----- ----- ----- <u>따라</u>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정선군 공고 제2022-173호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 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사실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5일

정 선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고정 및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여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3. 촬영범위 및 시간 :

고한읍 지역내 설치장소 주변 불특정다수 및 24시간 연속촬영

4. 설치 장소

- 이동식 감시카메라

연번	행정동	설치예정지	비 고
1	고한읍	고한읍 상습무단투기지역	1대

5. 공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6. 행정예고기간 : 2022. 2. 15. ~ 3. 7 (20일)

7.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한읍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2. 2. 15. ~ 3. 7 (20일)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 기준)
 - 제 출 처 :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1 고한읍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전화 : 033-560-2717, 팩스 : 033-560-2412)
 - 기재사항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한읍사무소 복지팀(033-560-27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사 업 명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무단 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관계법령 발췌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3. 29.>

②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